#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6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2019.8.20.)·시행(2020.3.1.)으로 기존 학교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련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조항이 필요없게됨 (해당 조항 삭제 필요)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
- 다. 기타 학교 현장의 학부모 활동 목적 및 학부모회 기능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학부모 활동의 목적을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서 '교육활동 참여'로 수정 (안 제1조)
- 나. 학부모회 기능 중 '학부모 자원봉사' 부분 삭제 (안 제5조제2호)
-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3조제2항)
- 라.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서신·우편·전자투표'로 확대 (안 제13조제5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별첨 7]**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 다. 협 의: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20.4.23.~5.12.) 결과: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점 4]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별점 5]
  -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6]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활동을 지원하여"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제1조(목적)
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	
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	
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제5조(기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수행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	2. <u>학교교육</u>
<u>육</u> 활동 참여·지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생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	②
행령」제59조제2항 및 「서울	
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u>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u>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
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	모위원

현 행	개 정 안
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	
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u>학부모위원</u> 을 선출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
	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
	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 【별첨 2】

선울특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조항 삭제 및 의결사항 방법 확대, 목적 및 기능 일부조항 미 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으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박선미(02-3999-471)

##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당 없음		
	по вка		

## 【별첨 4】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행정6		이지은
입안주관부서	참여협력담당관	통보일	2020.5.6.
관 련 조 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대상 전체조문) 안 제7조 안 제13조	- 동 규칙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 등 현실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상황을 반영하여 학부모총회 의결과 임원 선출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한정하여 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담보함 -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별첨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13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관명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부서	부서명	참여협력담당관		
	담당자명	박선미	전화번호	02-399-94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5월 11일			
주요	「서울특별시고	고육청 학교 학부.	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
성별영향평가 내용 (참여협력담당관)	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앞서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및 균형참여 반영, 성별통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항목별 포인트를 점검함.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회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의결 진행 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며,			
검토의견	소관 부서가 미리 점검한 바와 같이 개정안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5월 11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신지은/02-399-3910)

참여협력담당관장 귀하

## 【별첨 6】

#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참여협력담당관	성 명 : 박선미 담당자 직 급 : 주무관 연락처 : 02-3999-471		71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해당조항	검토결과		검토결과	
제1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저으크 조레기 상세이되에 미치트 여상이 다시 이오			☑ 원안동의 □ 개선권고 □ 중단권고
해당조항	참고의견			
조례 전반	<ul> <li>교육기본법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부모 등 보호자로 명명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부모의 명칭을 일괄 보호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li> <li>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li> <li>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li> </ul>			

### 관련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2013. 8. 6.〉

<개정 2009. 12. 29., 2019. 3. 26.>